

「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7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유동근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잦은 제·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누적됨에 따라, 제·개정된 상위법령명 및 용어와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개정(10개 조례)

조 례 명	개정내용
•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	인용법령 및 조항
•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	인용법령
•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	용어(시체→시신)
•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	인용조항
•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	인용법령
•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인용법령
•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인용조례
•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인용법령 및 조항
•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	인용법령 및 조항
•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	용어(장애자→장애인), 인용법령

○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 조례 개정(3개 조례)

조례명	개정내용
•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	문화체육과장→문화관광과장 관광경제과장→경제체육과장
•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	민원봉사과장→종합민원과장
•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	민원봉사과장→종합민원과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법령 제·개정사항 미반영,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,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의 제·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 변경, 용어변경 등의 사항을 평창군 상표권 관리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,
변경된 부서장 명칭변경을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등 3개 조례에 반영함.
-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체육과장, 관광경제과장”을 “문화관광과장, 경제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업무표장”이란 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.

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7호”를 “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1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“전용사용권자”란 「상표법」 제95조에 따른 사용권자를 말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「상표법」 제57조”를 “「상표법」 제97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등”을 “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및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의료급여심의회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의료급여 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법 제24조”를 “「의료급여법」 제24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아목 중 “시체나”를 각각 “시신이나”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제6조(「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4조”를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」”를 “「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(「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

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”를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제10조(「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장애자용”을 “장애인용”으로, “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종합민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종합민원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□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자치행정과장, <u>문화체육과장</u>, <u>관광경제과장</u>, 산림과장, 농축산과장이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문화관광과장</u>, <u>경제체육과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□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<u>업무표장</u>”이란 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“<u>서비스표</u>”란 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을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업무표장</u>”이란 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<p>말한다.</p> <p>5. "상표의 사용"이란 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</p> <p>6. "전용사용권자"란 「상표법」 제55조에 따른 사용권자를 말한다.</p> <p>7. "통상사용권자"란 「상표법」 제5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보통의 사용권자를 말한다.</p> <p>제13조(사용승인의 취소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등 식품관련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5. ----- 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11호----- -----.</p> <p>6. "전용사용권자"란 「상표법」 제95조에 따른 사용권자를 말한다.</p> <p>7. ----- 「상표법」 제97조----- -----.</p> <p>제13조(사용승인의 취소 등) ① 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및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□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	제3조(기능) -----

<p>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<u>법 제24조</u>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 「의료급여법」 제24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□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화장"이란 <u>시체나</u>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"개장"이란 매장한 <u>시체나</u>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"연고자"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, 연고자의 권리·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. 다만,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(最近親)의 연장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<u>시신이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----- <u>시신이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. 가. ~ 사. (생략) 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<u>시체나 유골</u> 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	-----.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----- ----- - <u>시신이나</u> ----- -----
--	---

□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제9조(사용료 징수 등) ①·② (생략)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. 1. 「 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 」 제5 <u>조에 따른 수급권자</u> 2.·3. (생략) ④ (생략)	제9조(사용료 징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 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 」에 <u>따른 수급권자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
□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현행	개정안
제15조(관계규정의 적용) ① 「 <u>지방재정법</u> 」 중 경리관과 징수관	제15조(관계규정의 적용) ① 「 <u>지방회계법</u> 」-----

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계, ② (생략)	----- -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4조(광고물의 특례) ① 평창군 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특구지역에서 「 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 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특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4조(광고물의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「 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조 ----- ----- -. ② (현행과 같음)

□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. 1. 「 <u>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1. 「 <u>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</u>

<u>례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 대</u> 2. (생략)	<u>운영 조례」</u> ----- -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□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,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----- ----- ----- ----- -

□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현행	개정안
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장기예치기금액은 평창군의 지정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	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-----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----- ----- -----

<p>다만, 금융기관이란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「은행법」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
---	--

□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자전거이용시설"이란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(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<u>장애자용</u> 의자차를 제외한 다. 이하 같다)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「<u>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시행령」(이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」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애자용</u> ----- ----- ----- 「<u>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 시행령」</p>

<p>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삭제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7조(개선기준의 설정)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「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기준규칙"이라 한다)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개선기준의 설정) ----- ----- - 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

□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

현	행	개	정	안
---	---	---	---	---

